

美國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現況과 立法化動向

保險開發院 家計保險部

◀ 目 次 ▶

- I. 머리말
- II. 美國의 製造物責任訴訟 狀況
- III. 美國內 PL訴訟 増加의 社會・經濟的 背景
- IV. “缺陷” 概念의 擴大
- V. 美國의 製造物責任法의 立法化 動向
- VI. 美國의 裁判制度
- VII. 美國의 損害賠償金 水準

I. 머리말

미국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은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하여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Richard Neely교수가 지정한 바대로 「The Product Liability Mess」(1988년刊), 바로 그것이다. 특히 1986년 2월에 대통령에게 제출된 「Report of the Policy Working Group on the Causes, Extent and Policy Implication of the Current Crisis in Insurance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의 보고서에서 저간의 실정을 극명

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구미지역에서도 1985년 7월 EC각료이사회는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를 통하여 동지침상의 내용을 수용할 것을 EC가맹국가에게 의무화한 바 있으며 또한 일본도 「製造物責任法(案)」의 국회상정이 금명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미 수출제조물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등이 여러분야에서 검토되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실무적인 접근은 거의 전무에 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미국의 동보험이 처한 현실과 내용을 담아보았으며 앞으로 각주별 제조물책임에 관한 立法化動向을 관심있게 추적하여 보았다. 이 자료는 각국의 관련자료등을 번역하여 옮겨 실은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두고자 한다

II. 미국의 製造物責任訴訟 狀況*

1. 訴訟件數의 推移

* 歐美의 「products liability」에 대하여 법조계, 學界 또는 言論界에서는 이를 一般의로 製造物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는 反面 보험업계는 실무관행상 生産物이라 통칭한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두용어를 굳이 統一하여 쓰지않고 각분야별로 그 쓰임에 따라 두루 混用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88년에 美國聯邦地方裁判所に 提訴된 製造物責任訴訟件數는 17,140件으로 1974년에 比較하면 11.3배가 増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1)에서 보는바와 같이 「製造物責任以外의 不法行爲訴訟」에 비하여 「製造物責任訴訟」 만이 異常으로 急増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으며 이를 상품내역별로 살펴보면 石綿(Asbestos)關聯製造物責任訴訟이 急増하는 반면 그 이외의 상품은 다소 減少하는 推移를 보이고 있다.

〈表1〉 聯邦地方裁判所 製造物責任訴訟提起 件數의 推移

區 分	訴訟件數	石綿關聯 訴訟件數	石綿以外의 訴訟件數	PL訴訟 以外의 不法行爲訴訟
1974	1,520	7	1,513	22,200
1975	2,652	51	2,601	22,569
1976	3,414	64	3,350	21,860
1977	3,739	137	3,602	21,891
1978	3,985	309	3,676	21,787
1979	4,745	382	4,363	22,637
1980	6,201	1,170	5,031	24,165
1981	7,689	1,768	5,921	24,083
1982	8,236	1,997	6,239	24,760
1983	8,513	2,023	6,490	26,880
1984	9,945	2,945	7,000	26,211
1985	12,389	4,403	7,986	27,324
1986	12,666	5,632	7,034	28,016
1987	15,151	* 7,776	7,375	28,824
1988	17,140	* 10,715	6,425	28,795

註) 1. 資料出處: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U.S. courts. 단, 1974~1986년 통계는 Rand社의 「Product Liability and the Business Sector」에서 분석한 수치임.

2. * 표시의 數値는 石綿關聯 對人訴訟만의 數値임.

〈表 2〉 對人 製造物責任訴訟의 製品別 訴訟件數 推移

구 분	1984	1985	1986	1987	1988
자 동 차	652	612	656	649	623
항 공 기	371	278	216	151	185
선 박 등	133	112	93	99	101
석 면	2,788	4,239	5,463	7,776	10,715
기 타	5,733	7,266	6,031	5,478	4,542
합 계	9,677	12,507	12,459	14,153	16,166

註) 資料出處: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U.S. courts.

石棉(Asbestos)을 제외한 製造物責任訴訟件數는 1985년을 頂點으로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製造物責任訴訟의 급증에 대한 社會的批判 또는 各州에서 일고있는 製造物責任法의 立法化 등의 영향이라고 풀이된다.

2. 製品別 訴訟件數의 內譯

1974년 부터 1986년 까지의 製造物責任訴訟 85,694件의 業種別 內譯은 <表 3>과 같으며 산업용기계, 공구, 의약품, 자동차등이 상위를 점유하고 있고 아울러 모든 상품이 無差別의으로 製造物責任訴訟의 對象으로 나타나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表 3> 製造物責任訴訟의 製品別 內譯

業 種	訴 訟		被 告	
	件 數	%	被 告 數	%
製 造 業				
1. 공구, 기계, 산업용설비	14,122	16.5	5,967	30.7
2. 유리, 粘土, 石, 石棉	14,105	16.5	450	2.3
3. 醫藥品, 健康用品	11,574	13.5	434	2.2
4. 乘用具(자동차, 오토바이 등)	6,901	8.1	616	3.2
5. 화학제품	4,418	5.2	1,143	5.9
6. 電機, 電化製品(OA機器 包含)	3,936	4.6	1,233	6.3
7. 항공기 및 관련부품	3,538	4.1	422	2.2
8. 木製品, 紙工品	2,735	3.2	809	4.2
9. 纖維제품, 皮革제품, 의복	2,602	3.0	524	2.7
10. 식품, 청량음료, 담배	2,357	2.8	1,198	6.2
11. 기타(타이어, 화학제품, 輸送用具 등)	6,706	7.9	2,382	12.3
非製造業	11,138	13.1	4,252	21.9
(소매점, 레스토랑, 전설업, 렌트업, 공익사업, 운수업 등)				
聯邦, 州, 地方公共團體	1,562	1.8	26	0.1
合 計	85,694	100.0	19,456	100.0

註) 資料出處: Rand社 刊行 「Product Liability and the Business Sector」

製造物責任訴訟에서는 하나의 소송으로서 製造者, 供給者, 部品製造者 등 상품의 流通에 관련한 모든 사람이 被告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 현상이다. 그

러나 위의 통계에서는 주된 피고만을 계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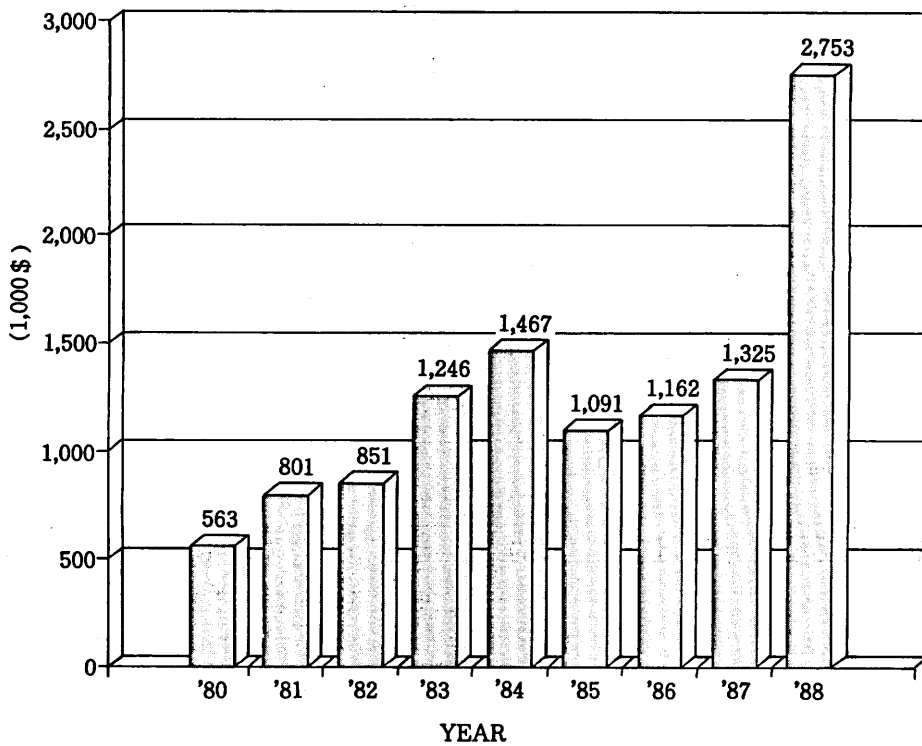
또한 「돌, 유리, 粘土」項目이 상위를 점유하고

있으나 同 項目의 14,105件中 13,340件이 石棉關
聯 訴訟이다(석면관련 소송은 「돌, 유리, 점토업」
이외에 섬유제품, 종이제품, 서비스업, 운수업 등
광범위한 업종에 관련된다).

3. 高額化する 製造物責任訴訟判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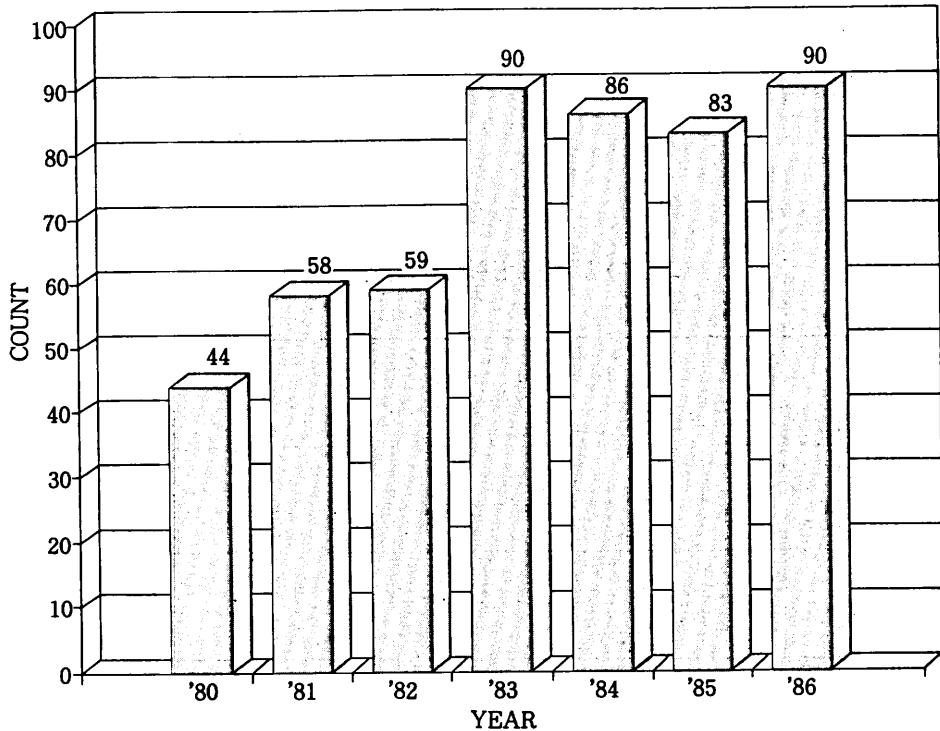
제조물책임소송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건당 판결
액도 고액화되고 있으며 100만불 이상의 판결
(Million Dollar Award)이 흔해졌다.

〈그림 1〉 製造物責任訴訟 平均判決額 推移



註) Jury Verdict Research, Inc.

〈그림 2〉 1件이 100萬弗 以上인 製造物責任訴訟件數 推移



註) Jury Verdict Research, Inc.

Ⅲ. 美國內 PL訴訟增加의 社會・經濟的 背景

1. 訴訟社會

미국인은 訴訟族이라고 불릴만큼 訴訟選好意識을 가지고 있다. 미국사회는 게임理論(Game Theory)의 사회라고도 불리는데 미국인에게 訴訟의提起는 感情의 問題가 아니고 一定한 規則下에서 勝敗를 決定짓는 게임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社會 風潮는 이웃사람이나 친구를 訴訟하는 行爲가 결코 基本秩序를 어지럽히는 行爲가 아니므로

韓國, 日本 등에 비해 訴訟에 對한 抵抗感은 거의 없다. 裁判制度, 辯護士制度 혹은 保險制度등 미국 社會의 시스템이 이러한 文化의 바탕위에 構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辯護士制度

1) 過多한 辯護士集團

미국에는 현재 약 70萬名の 辯護士와 그 밖에 法律事務所가 있다. 따라서 身體에 異常이 생기면 醫師(醫療機關)에게 가는 것과 동일한 認識으로 法律問題가 생기면 辯護士나 法律事務所에 相談을 한다.(참고로 일본과 한국의 변호사는 각각 13,

500명, 2,230명임)

2) 成功報酬制度

피해자가 수백만불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少額의 費用으로 소송의 착수가 가능하며 勝訴한 경우에만 획득한 損害賠償金의 30%~50% 범위내에서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많은 소송을 유도하고 있다.

3) 訴訟勸誘廣告의 認定

특정의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을 맡기 위하여 소송권유를 할 수 있으며 이점이 連鎖的訴訟를 招來하는 원인이 된다.

3. 消費者保護主義(Consumerism)

미국에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법률상 혹은 사회생활상 여러가지 保護裝置가 제도화되어 있다. 이 기틀은 1962년 John. F. Kennedy 大統領이 발표한 消費者의 4가지 權利에서 잘 나타난다.

- 가) 알고자하는 權利(the right to be informed)
- 나) 보다 安全한 商品에 대한 權利(the right to safety)
- 다) 妥當한 選擇을 할 權利(the right to choose)
- 라) 不平을 質問하여 들을 權利(the right to be heard)

또한, 大企業은 충분한 資金을 갖고 있으므로 그들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가지지 못한 被害者를 救濟하여야 하며 기업은 그 負擔을 製品原價에 轉嫁하여 分散할 수 있다는 Deep Pocket Theory가 사회적으로 많은 共感을 얻고 있다.

4. 懲罰的 損害賠償金(Punitive Damages)制度

징벌적 손해배상금제도는 피고에게 製品의 缺陷發生이나 缺陷判明後의 事故防止에 關하여 故意・惡意가 있으면 通常의 損害賠償金外에 3배 혹은 그 以上の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는 미국 특유의 特別賠償金制度이다. 이제도의 한 예로서 1978년에 발생한 fender缺陷 訴訟事件을 보면 제조업자가 가솔린탱크의 설계상의 결함을 알지 못하여 適切な 安全對策을 하지 않은 이유로 통상의 손해배상금 800만불에 懲罰的賠償金 1억2,000만불을 더한 1억2,800만불을 支拂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이 사건은 最終的으로 700만불의 판결을 받았다).

5. 嚴格責任理論(Strict Liability)의 擴大

嚴格責任理論은 缺陷商品을 시장에 내놓은 製造者나 販賣者가 過失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품에 起因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63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채용되었고 그 후 他州에도 확대되어 현재는 모든 주에서 채택되고 있다. 上記判決 이전에는 피해자는 제조자등의 “過失”의 立證이 필요하였으나 이 理論下에서는 “缺陷”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容易해지는 결과 된다.

6. 陪審員制度

미국의 재판제도는 광범위한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재판상 事實認定(예를 들면 당해 상품에 대한 결함유무의 인정)등에 대하여 6명~12명의 일반인을 법정에서 출석시켜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은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유무 혹은 손해배상액등에 대해 判決은 하지 않음

나 일반적으로는 被害者에게 동정적이 되기 쉽다.
또한 이와 같은 배심원을 어떻게 자기 측으로 끌어들이는 가는 法廷技術에 힘입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V. “缺陷”概念의 擴大

美國의 製造物責任判例에 있어서는 제조자에게 다음과 같은 注意義務가 賦課되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製造者는 그 제품에 固有 혹은 表面的으로 알 수 없는 危險에 의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때는 제품의 危險에 相應한 相當의 配慮를 할 책임이 있다.

결함상품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결함으로 구분된다.

1. 設計上の 缺陷

- 가) 관련법규상의 安全規格의 違反
- 나) 예상되는 誤用에 대하여 完全保證(full-proof)의 不備
- 다) 예상되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安定性の 缺陷
- 라) 기존의 他會社가 취하고 있는 유사한 안전 설계의 결함.
- 마)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의 부적절

2. 製造上の 缺陷

- 가) 제조·조립상의 불량(部品の 缺陷, 銲接의

不良 등)

- 나) 異物の 混入

- 다) 원재료의 불량(변질, 부패 포함), 원료혼입 실수

- 라) 수송, 포장, 보관상의 不備

3. 라벨, 取扱説明書上の 缺陷

상품자체로는 문제가 없어도 취급설명서나 라벨이 불충분하면 결함상품으로 인정 되는 경우가 있다.

- 가) 상품의 정확한 사용에 대한 설명의 불충분
- 나) 소비자가 그 상품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고내용의 不備
- 다) 예상되는 誤用이나 目的外的 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경고내용의 不備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製造者에게 嚴格한 注意義務가 부과되고 있으나 상품과 관련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제조자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소비자의 남용, 부적절한 사용, 취급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위반한 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제조자의 책임밖의 사고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1) 商品の 不適切한 使用

가스스토브를 사용하고 있던중 환기가 잘되지 않아 실내에 일산화탄소가 가득차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모녀가 가스스토브 제조자를 제소한 사건을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실내의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된 경우에 가스스토브가 자동으로 꺼지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는 증거가 없고 그러한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결합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가스스토브 제조자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되었다(1985 아리조나州 上訴判決)

2) 豫測할 수 없는 使用

8살 소년이 골프공을 가위로 자르는 동안 그 중심부의 粘液이 飛散하여 소년의 눈에 상처를 입은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그 골프공은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전하고 또한 제조당시에는 어린이가 골프공의 중심부까지 손상시킬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제조자로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경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골프공 제조자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되었다(1989 일리노이州 地法판결)

3) 상품의 誤用, 非正常的인 使用

건설현장에서 사람을 매달아 올리고 내리는데 화물용크레인을 사용하던중 크레인이 크게 요동하며 倒壞되어 인부가 상해를 입은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크레인의 이러한 사용 방법은 제조자가 예측할 수 없는 제품의 오용으로서 제조자의 주의의무를 초과한 것이므로 제조자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되었다(1980 미주리州 高法判決)

4) 明白한 危險

펜티스타킹이 이상하게 미끄러져 구두로부터 발이 빠져 상해를 입은 사건의 경우, 펜티스타킹의 일반적인 특징은 미끄러지기 쉬운 것이므로 이러한 原告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기타 결합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되었다(1985 일리노이州 上訴

判決)

V. 미국의 製造物責任法の 立法化 動向

제조물책임소송의 소송건수 증가와 배상액의 고액화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 때문에 倒産하는 기업, 배상청구의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상품의 제조를 중지하는 기업이 속출하게 되었다. 또한 보험회사는 製造物責任保險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도 하고 보험인수를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1985년의 保險危機 이후 기업의 제조물책임 완화를 위하여 聯邦 및 州에서는 과거에 判例法으로서 형성되었던 製造物責任法理를 制定法에 의하여 수정하려는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1. 各州의 立法化動向

현재 약 45개州에서 어떤 형태로든 제조물책임을 제한하는 입법화가 행해지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非經濟的 損害(Noneconomic Damages)의 制限

비경제적 손해로는 정신적 손해, 신체적 장애로 인한 본인의 육체적인 고통 및 정신적 고통, 불안, 사회나 친구와의 접촉상실, 건전한 가족관계의 상실등에 대한 慰藉料를 말한다. 여러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後遺障害에 대한 위자료가 고액화되고 있다.

뉴저지주	\$ 875,000
캔서스주	\$ 250,000 ^(註)
오레곤주	\$ 500,000
콜로라도주	\$ 500,000

따라서 이와 같은 비경제적 손해가 경제적 손해에 비하여 훨씬 많은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금액적인 제한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액상 제한을 설정하고 있는 주는 몇개 주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내용에도 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懲罰的 損害賠償의 制限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고액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의 제한방법은 다음의 2종류로 구분된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는 「明白하고 納得할 수 있는 證據(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따라 피고에게 악의, 의도적인 무시, 엉뚱한 행위 등 소비자의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인 것을 원고가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주가 있다.

②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제한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텍사스주, 버지니아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3) 根據가 貧弱한 訴訟(Frivolous Suits)의 提起나 防禦의 制限

원고측의 근거가 빈약한 소송의 제기나 피고측의 應訴를 제한하는 경우이다. 즉,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 혹은 피고에 대하여 재판상의 비용, 변호사비용등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다.

4) 連帶責任의 原則(Joint and Several Liability)의 修正

미국의 製造物責任法理의 하나로써 제조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어느 한쪽의 사업자에게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연대 책임의 원칙을 수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輕微한 過失뿐인 경우에도 손해액 전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므로 上記原則을 29개주가 수정하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은 각주마다 조금씩 다르나 그 흐름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連帶責任原則의 廢止

연대책임을 폐지하고 피고인 제조자가 각각의 책임비율 혹은 그 일정배수 까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연대책임의 원칙을 수정하고 있는 주는 플로리다, 캔터키, 아리조나, 유타, 워싱턴, 콜로라도, 와이오밍, 조지아, 아이다호, 미주리주이다.

② 連帶責任原則의 一部修正

위자료등의 비경제적 손해에 대하여만 연대책임 원칙을 폐지하여 연대책임의 원칙을 수정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오히오, 오레곤주이다.(치료비, 상실이익등의 경제손해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연대책임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과실비율이 일정이하(25%~50%)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하여 연대책임의 원칙을

註) 육체적 고통에 관한 慰藉料에 대하여만 제한하고 있다. 그 이외의 위자료에 대하여는 금액의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정하고 있는 州는 알래스카, 하와이, 일리노이, 몬테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미네소타州이다.

5) 重複補償原則(Collateral Source Rule)의 修正

산업재해와 같이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부터의료비등 일정급부를 받은 후 재해를 입게 한 공장기계나 건설기계의 제조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訴訟을 제기하여 동일손해에 대한 二重補償이 인정되어온 바 있다. 이러한 二重補償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21개州가 「피해자가 산재보상등에 의한 給付를 받은 경우 피고가 손해액을 산정할 당시의 증거로서 법정에 이 사실을 제시」하도록 하고있다.

6) 法定責任期間(Statute of Response)의 設定

과거부터 불법행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出訴期限(Statute of Limitation)^{註)}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사고발생시로부터 일정기간(각州에 따라 다르나 1~6년이 많다) 경과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耐用年數가 장기간인 제품인 경우는 상품판매후 30년~40년 경과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이 소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사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法定責任期間」을 설정하는 州가 증가하고 있다. 「법정책임기간」은 「상품이 제조, 판매

된 후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21개州와 콜롬비아특별구에서 인정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州가 그 기간을 10년~12년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의 憲法上權利의 侵害라는 점을 들어 플로리다州와 유타州에서는 違憲으로 처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今後의 동향이 주목된다.

2. 聯邦次元의 立法化 動向

구체적인 입법화는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10여년동안 입법화를 위한 연방의 상원 및 하원에서 여러방면으로 검토가 진행되어온바 있다.

1) 立法化의 展開過程

① 1979년 10월 연방상무성에서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The Model of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를 발표하였는데 일부의 州에서만 이 모델법을 채택함으로써 모든 州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통일법을 제정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② 1983년 6월 Castin상원의원이 聯邦 제조물책임법안(카스틴법안)을 상원에 제안 하였으나 심의완료전에 폐기되었다.

③ 1983년 1월 카스틴의원이 위 법안을 상원에 再上程하였다. 동 법안은 1984년 3월 상원 商業委員會로부터 승인되었으나 동년 5월 상원 본회의에서 폐기되었다.

④ 1985년 7월 단포스법안(단포스의원)이 발표되었으며 동년 12월 상원 商務委員會에 제출되었

註) 제조물책임소송에서는 이 출소기한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Discovery Rule"이 채택되고 있으며 다음중 빠른 것을 말한다. a.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재물손해가 발생한 때 b. 相當한 注意(Reasonable Due Diligence)를 하면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 때

다.

⑤ 1986년 9월 카스틴법안, 단포스법안 및 이들을 수정 통합한 통일제조물책임법안(Product Liability Reform Act, S, 2760)이 상원에 제안되어 압도적 다수로서 가결되었다.

⑥ 1987년 3월 카스틴상원의원 및 단포스상원의원이 상원에 제안하고 하원에서는 리차드선하원의원이 별도의 법안(Uniform Product Safety Act, H, R, 1115)를 제출하여 상원 및 하원의 小委員會에서 수정, 통과하였으나 본회의에서 기각되었다.

⑦ 1989년 7월 카스틴상원의원이 聯邦제조물책임改革法案(Federal Product Liability Reform Act, S, 14000)을 발표하여 상업, 과학 및 운수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

⑧ 1990년 2월 상원 상업위원회와 소비자소위원회는 연방 제조물책임개혁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⑨ 1990년 5월 상원의 상업, 과학, 운수위원회는 연방 제조물책임 개혁법안을 찬성 13인, 반대 7인으로서 승인하였다.(현재 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상원 본회의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약 10년간에 걸쳐 聯邦統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를 위한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연방차원의 통일된 법안의 정립을 위하여는 많은 난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2) 최근의 聯邦製造物責任改革法案(Product Liability Reform Act)의 主要内容

①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인정되나 그것은 제조자측의 악의적인 요인이 내재하고 명확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 국한한다.

② 出訴期限의 통일화

피해 혹은 사고원인을 안 때부터 2년이내의 제소로 제한한다.

③ 法定責任期間의 설정

상품의 최초 판매시부터 25년을 경과한 상품(자본재)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제조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④ 重複補償의 排除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원고가 이미 보상받은 바 있는 산재보험 급부액을 감액한다.

⑤ 連帶責任原則의 수정

비경제적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주의를 배제하고 자기의 과실비율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⑥ 알콜, 藥物中毒에 의한 사고의 제한

원고가 알콜이나 약물중독의 상태에 있고 그 상태가 사고발생에 대하여 50%이상의 寄與率로 나타날 때는 제조자의 면책으로 한다.

⑦ 공급자의 제조물책임의 완화

상품의 공급자는 자기과실에 의해 생긴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제조자가 소송상 令狀送達을 받지 못한 경우나 판결후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 본래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제조자책임을 완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식품, 의약품국)에서 인가된 의약품, 의료기기나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연방항공국)에서 인가된 항공기에 의해 발생한 신체장해에 대하여는 제조자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금을 부가시키지 않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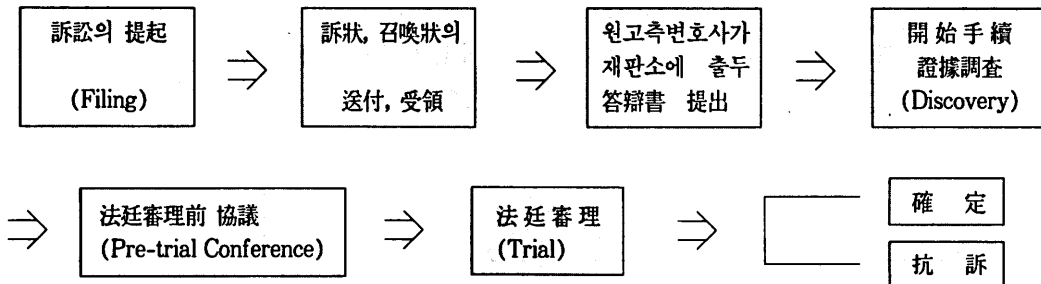
VI. 美國의 裁判制度

미국의 재판제도는 아래표와 같이 聯邦과 州의 2개 형태로 구성되며 각각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判例法의 국가인바 제조물책임法理도 聯邦 및 各州의 개별판례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리내용은 聯邦, 各州상호간에는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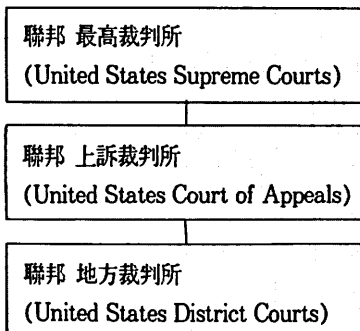
다른 체계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연방재판소의 재판관할범위는 제조물책임소송의 경우 원고, 피고가 상이한 주민간의 소송(즉 Diversity Case)에 한한다. 동시에 원고가 거주하는 州, 피고가 거주하는 州, 혹은 사고발생지의 州裁判所등도 재판관할을 한다. 제조물책임소송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여러 재판소가 재판관할을 하고 있으나 原告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재판소를 선택하여 제소하고 있다.

〈訴訟의 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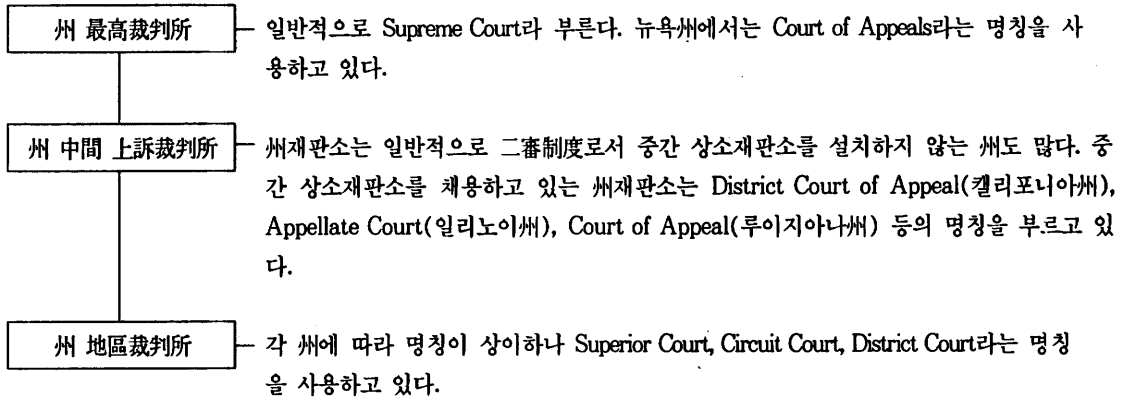


1. 聯邦裁判所



- 전국을 11개 구역으로 구분, 각 구역에는 1개의 상소재판소가 있다.

2. 州裁判所



VII. 美國의 損害賠償金 水準

손해상황	상품명 및 판결지	사 고 상 황	손해배상액
1. 死 亡	포크 리프트 (’88년 루이지애나州)	포크리프트를 조작중 橫轉하여 妻子가 있는 34세의 공원 사망	\$ 391,667 * 배심원 판결에서는 \$ 1, 175,000이었으나 본인의 조작상 과실이 인정되어 감액되었음
	체인톱(Chain saw) (’86년 루이지애나州)	펄프공장에서 체인톱을 사용하여 통나무 절단작업을 하던 57세 작업원이 Kick back으로 인하여 목이 절단되어 사망. (Chain break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 인정)	\$ 290,000
	화재탐지기 (’84년 펜실베이니아州)	화재시에 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아버지와 아들이 대피 못한채 사망	\$ 2,451,983
	자동차 (’83년 플로리다州)	자동차가 다른차와 충돌후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의 미혼녀가 燒死	\$ 5,004,886
	텐트 (’83, 뉴욕州)	防火加工을 하지 않은 텐트가 불에 타 안에 있던 5세 소녀가 燒死	\$ 300,000

손해상황	상품명 및 판결지	사 고 상 황	손해배상액
2. 重度障害	trampoline (‘84년 일리노이州)	고교생소녀(16세)가 학교의 미니트 림폴린위에서 공중회전하다가 외부에 떨어져 등에 타격을 받아 半身不隨(적절한 경고가 없었음)	\$5,000,000 (학교와 별도로 \$1,600,000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음)
	ワクチン(백신) (‘87년 와이오밍州)	3종혼합 백신(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예방)을 주사받은 유아(생후 3개월)가 그 부작용으로 下半身 마비	\$1,131,200
	난방용히터 (‘83년 루이지애나州)	난방용 Space heater를 구입한 주부가 그 heater의 구조상 결함에 의하여 일산화탄소에 중독, 영구적인 뇌장해를 입음	\$800,000
	強心劑 (‘88년 일리노이州)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2세 어린이에게 좌약으로 아미노피린을 투여한 결과 어린이가 뇌장해를 입음(제조자는 FDA에서 정한 Guide line에 따라 좌약으로 어린이에게 투여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하여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음)	\$21,375,000 ○ 일반배상금 \$8,375,000 ○ 징벌적 손해배상금 \$413,000,000
3. 失 明	Wire brush (‘85년 뉴욕州)	회전식 wire brush를 장착한 공기 드릴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중 brush의 일부가 飛散하여 작업원의 눈에 맞아 안구에 심한 손상을 입음. (검사 및 경고상의 과실 확인)	\$975,380
	Soft drink (‘87년 루이지애나州)	피해자(남성, 24세)가 캐나다드 라이 소다병을 별도의 선반에 옮기던중 알루미늄 Cap이 비산하여 피해자의 눈에 자극되어失明(사료공장의 Capping Machine의 조작 유지관리상의 과실을 인정되었음)	\$300,000

손해상황	상품명 및 판결지	사 고 상 황	손해배상액
4. 손, 발의 喪失等	프레스기계 (’81년 미시간州)	19세 소녀가 프레스기계를 사용중에 스위치를 off시켰으나 돌연 작동하여 왼손가락 4개가 상실되는등 손전체 가 크게 상함	\$ 1,500,000
	플라스틱 성형기 (’80년 일리노이州)	플라스틱 성형기 청소작업중에 고온 의 플라스틱 조각이 비산하여 작업 원의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음(제조 자는 딱딱한 플라스틱조각이 비산할 위험을 알고 있었으나 적절한 경고 를 하지 않음)	\$ 75,000